

보증(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1. 부동산가압류¹⁾ 신청

정부수입인지 10,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2011.10.19.시행)

2. 담보제공명령

3. (현금)공탁(공탁서 2통,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위임장)

4. 가압류인용결정

5. 담보취소신청(현금공탁 시)

가.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 2통, 공탁서 사본
인지 1,000원, 송달료(2회분) 12,240원

나. 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승소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공탁서 사본,
인지 1,000원, 송달료납부서(2회분, 12,240원)

다. 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1) 가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함, 이하 같음.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패소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공탁서 사본, 인지 2,000원, 송달료납부서(5회분, 30,600원)

라. 담보제공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가압류집행해제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탁서 사본, 인지 2,000원, 송달료납부서(5회분, 30,600원)

6. 담보취소결정(통상 10일 정도, 권리행사 최고 시 50일 정도)

7.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발급

8. 공탁금회수

공탁금회수 청구서 2통,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공탁서사본 2), 위임장(위임인의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회수(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탁규칙 제37조).